

우)03173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, 705호(당주동, 세종빌딩) 전화 02)720-5004 / 전송 02)723-5003

## 2016년도 온천종사자교육 재통지

문서번호 : 온협16-327

2016. 09. 29

수 신 : 온천종사자(대표)

온천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·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온천종사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재통지하며, 사이버교육이나 집합교육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■ 교육내용

○ 교육시간 : 4시간(년1회)

- 온천법(행자부)2시간, 온천운영(협회)1시간, 공중위생관리(지자체)1시간

■ 사이버(온라인)교육

○ 정회원에 한하여 이수 가능(2016년 5월이후 수시)

- 정회원 : 협회홈페이지에 회원등록하고,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온천종사자

■ 집합교육 : 정회원 또는 정회원이 아닌 온천종사자

구분	일시	세부장소	비고
1차	5월 4일(수)	동래구청 회의실[부산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(복천동)]	완료
2차	6월 15일(수)	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[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]	완료
3차	10월 26일(수)	덕산 리솜스파캐슬 로즈마리홀 (041-330-8000) [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 45-7(사동리)]	예정
4차	11월 9일(수)	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보문산관 1층 컨퍼런스홀 [대전 중구 중앙로 101(선화동)] [(구)충남도청 정문 입구에서 오른쪽 뒤편, 북문 옆에 위치]	예정
시간	집합교육 당일 14:00~18:00 [4시간]		
교육비	○ 교육비 30,000원 - 계좌입금 [신한은행 140-009-424040 (특)한국온천협회] - 계좌입금시는 온천명으로 입금(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) - 정회원(당해연도 연회비 납부)은 교육비 면제 ※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)		

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



- 온천종사자: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목욕탕이외에 온천수를 사용하는 물놀이시설, 숙박, 객실만 있는 경우 및 개인공 외에 공동급수대상자도 해당됩니다. 본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온천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 (온천법 제2조,16조, 시행령 제17조)
-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. (온천법 제26조)
- 본 교육을 받을시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(목욕업, 숙박업)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. (온천법 제26조)
-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아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. (온천법 제26조, 시행규칙 제19조)
-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교육 불참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온천법 제37조)